

제194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 13.

복지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231호
----------	--------

2016. 1. 13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자 : 2016. 01. 08.
- 나. 회 부 일 자 : 2016. 01. 08.
- 다. 상 정 일 자 : 2016. 01. 12.

제안자 : 광진구청장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이희영 보건소장

### 나. 제안(제정)이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 적용범위 및 영업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 안전기준 등(안 제5조)
- ㉣. 지도·감독 등 (안 제6조)
- ㉤. 행정처분 등 (안 제7조) 및 부칙

## 라.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나.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입법예고(2015. 12. 18. ~ 2016. 1. 7.) 결과 : 의견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12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2016.2.19.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 시행하고자 2016년1월8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광진구 관할구역의 영업자에 한정하여 적용 범위 및 영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영업자의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타목7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7)에서 위임된 단서조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유흥주점 기준의 안전 시설 등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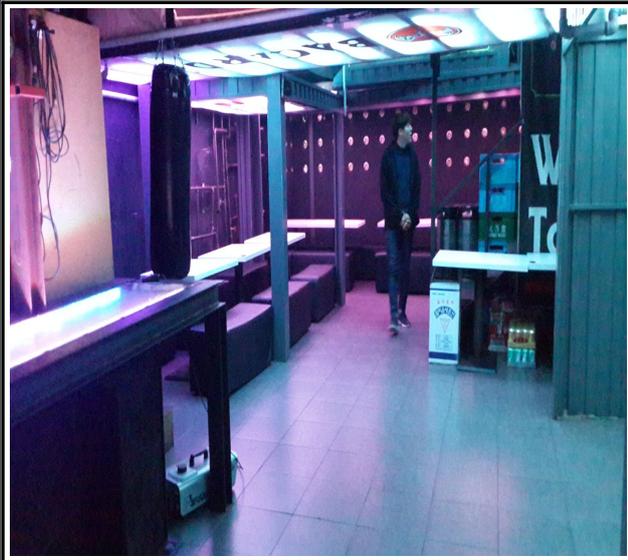
- 건대 맛의 거리는 새롭게 창출된 대중문화로 내·외국인에게 관광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촌, 홍대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 위반의 방치 및 일반음식점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15년 8월 18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하도록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놀이문화인 음악과 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용업소의 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영업 중인 9개소(감성주점) 건대 맛의 거리에 일반음식점의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맞게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 유흥주점으로서의 전환 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건전하고 합법적인 클럽문화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검토결과 타당하나 실제 시행에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각종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특히, 주민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더 꼼꼼히 수립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식품접객업 영업장(예시1)



별도 춤을 추는 공간  
(조례제정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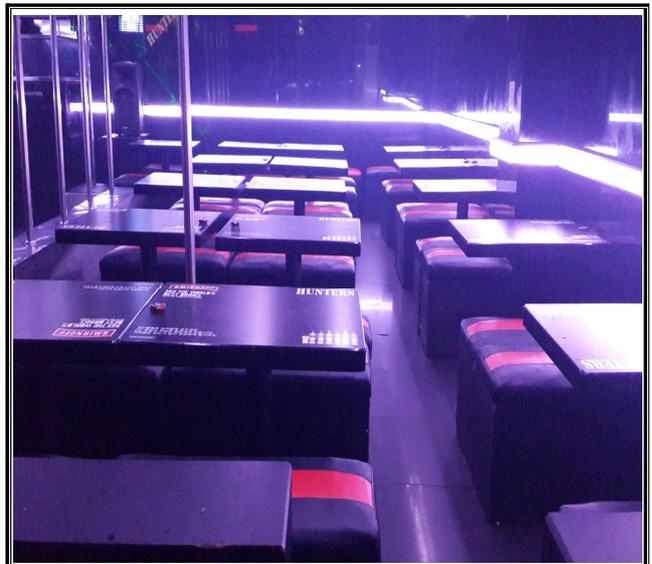


별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사이 공간에서 춤을 추  
(조례제정 後)

■ 식품접객업 영업장(예시2)



별도 춤을 추는 공간  
(조례제정 前)



별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사이 공간에서 춤을 추  
(조례제정 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

- 회의록 참조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 내 용 :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제6조  
-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를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로 수정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